

● 제320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신규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9. 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1173

### I. 동의안 개요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23. 8. 14.
- 다. 회부일 : 2023. 8. 21.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정된 공간 확보 및 운영을 위해 기존 사무형 위탁에서 시설형 위탁으로 전환이 필요함.
-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는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활성화와 그룹홈 간 협력·연계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그룹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 (2)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
-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커뮤니티시설동 210호(한강로2가, 용산 베르디움프렌즈)
- (4) 규모 : 193.1㎡(운영사무실, 회의실)
- (5) 위탁금액 : 387백만원('23년)
- (6) 위탁사무 내용
  - 개별 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 그룹홈 아동 입소, 퇴소, 상담, 조사, 사후관리 업무 등에 대한 지원업무
  -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지원업무
  - 효과적인 그룹홈 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및 연계체계 구축
  -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 그룹홈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 그룹홈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그룹홈 신규 설치 지원업무
  - 기타 시책 추진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업무 등
- (7) 위탁기간 : 2023.12.1.~2026.11.30.(3년간)
- (8)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 (9)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 필요성
  - 아동그룹홈 운영 컨설팅, 운영 상담 등을 통한 운영지원 및 지역 자원연계를 통한 그룹홈 기능 강화, 개별 아동그룹홈 간의 협력 시스템 마련으로 양질의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 지역자원과 아동그룹홈과의 연계 및 활용 체계 구축 등 전문 분야에 해당 되는 바, 우수한 법인·단체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 제공의 질적·양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위탁의 운영)

-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아동그룹홈 관련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전문단체 중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2023년 제4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완료(적정)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 만료와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인 사무 유형변경(사무형 → 시설형)으로 신규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 시장이 위탁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별 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 그룹홈 아동 입소, 퇴소, 상담, 조사, 사후관리 업무 등에 대한 지원업무
  -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지원업무
  - 효과적인 그룹홈 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및 연계체계 구축
  -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 그룹홈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 그룹홈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그룹홈 신규 설치 지원업무
  - 기타 시책 추진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업무 등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25, 2021.12.30>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28, 2021.12.30.>

③~⑤ (생략)

-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소규모 가정형태로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와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그룹홈 간의 협력, 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2)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임.
- 센터는 2012년 12월에 최초 설치한 이후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서 수탁하여 운영해 왔으며 추진 경위는 아래와 같음.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경위 >

구분	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1차	‘12.12.1.~’15.11.30.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공개모집 *시의회 동의 ‘12.9.10.
2차	‘15.12.1.~’17.11.30.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재계약
3차	‘17.12.1.~’20.11.30.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공개모집
4차	‘20.12.1.~’23.11.30.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공개모집 *시의회 동의 ‘20.6.30.

2)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와 그룹홈간의 협력, 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룹홈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31.>

1. 개별 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2. 그룹홈 아동 입소, 퇴소, 상담, 조사, 사후관리 업무 등에 대한 지원업무
3.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업무
4. 효과적인 그룹홈 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및 연계체계 구축
5.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6. 그룹홈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7. 그룹홈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8. 그룹홈 신규 설치 지원업무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업무

- 또한 센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2023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해 걱정 심의 결과<sup>3)</sup>를 받아 '23.6.25일자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음.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위탁시설 현황>

운영 주체	위탁 기간	(이전) 소재지			(변경) 소재지	
		위치	면적(㎡)		위치	면적(㎡)
한국아동 청소년 그룹홈 협의회 (대표 방영탁)	' 20. 12. ~ 23. 11. (3년)	중구 을지로18길 5, 무광빌딩 6층	108	(23.6.25)	용산구 한강로2가 426, 102동 210호 중 일부 (시유재산)	100 (공유 회의실, 교육실 별도)

- 이와 관련해 금번 동의안에서는 그룹홈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과 그룹홈 보호아동 및 자립(예정)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 및 각종 교육 실시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보다 지속·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운영하기 위해 위탁유형을 사무형 위탁에서 시설형 위탁으로 변경하고자 함.

사무형 위탁	시설형 위탁
행정재산(市 소유시설, 전세권 설정한 임차시설 등의 관리위탁 없이 사무만 위탁	행정재산(市 소유시설, 전세권 설정한 임차시설 등의 관리위탁 수반

3) 서울특별시 아동담당관-6614, 2023.3.24.

## 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4)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 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의 명의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는 시장의 사무라 할 것임.
-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1항제3호5)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와 서울특별시 내 설치된 그룹홈 간의 협력, 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을 요

4)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구하는 이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또한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1조<sup>6)</sup>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의 사무인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무는 민간 위탁 사무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 3 종합 검토 의견

- 금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법적인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아동공동생활가정과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필요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의 입소, 퇴소, 상담, 조사, 사후관리 업무 등에 대한 지원, 종사자를 위한 교육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확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센터를 최초 설치하여 위탁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동일기관에서 사무를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어 관행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관리·감독에 주의가 요구되며, 향후 위탁유형을 사무형에서

6)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아동그룹홈 관련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전문단체 중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시설형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함에 있어 경쟁력 있는 단체 또는 법인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임.